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16드단204000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소

원 고 갑

양산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 고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피고 보조참가인 1. A

2. B

보조참가인들의 주소 부산

보조참가인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17. 3. 23.

판 결 선 고 2017. 6. 22.

주 문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해 생긴 비용을 포함하여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와 망을 (등록기준지 : 여수시) 사이에 2012. 8.경부터 2016. 3. 15.까지 사실혼

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5. 9. 5. 소외 망 김00과 혼인신고 후 슬하에 두 아들을 두고 혼인생활을 하였으며, 망 김00은 1998. 3. 31. 사망하였다.

나. 망 을(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0. 9. 6. 소외 김**과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피고 보조참가인들을 두고 혼인생활을 하다가 2003. 2. 24. 김**과 협의이혼을 하였다.

다. 망인은 2016. 3. 15. 14:00경 부산 남구 소재 00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인부로 일하던 중 16층에서 추락하여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9:25경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8.경부터 망인이 사망한 2016. 3. 15.까지 망인과 혼인의 의사로 혼인생활의 실체를 이루며 동거한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유족급여 및 국민연금법 상의 유족연금의 수령 등을 위해 이 사건 사실혼관계 존재확인을 구하고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 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하며(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등 참조), 다만,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한다. 따라서 사실혼에 해당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 의사의합치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회적 사실이 존재하여야 하며, 사회적 정당성 또한 갖춰야 한다.

나. 판단

갑 제8호증, 갑 제10 내지 12호증,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6호증의 1 내지 11, 갑 제14호증의 각 일부 기재, 갑 제4호증의 1 내지 14, 갑 제15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망인 생전에 망인과 함께 여수 **도에 있는 망인의 어머니 댁에 몇 차례 방문하거나 여행한 적이 있고, 망인의 사후 망인의 아버지 제사에 참석하기 위해 여수 **도에 가기도 한 적이 있는 사실, 원고는 또한 망인과 함께 망인의 형제자매나 망인의 친구들과 여러 차례 어울려 식사 등도 함께 한 사실, 망인 명의로 2015. 8. 26.경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체결된 내생애든든종합보험계약 상의 만기보험수익자가 원고로 되어 있고, 위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상 계약자인 망인의 주소가 원고가 운영하던 미용실 주소로 기재된 사실, 또한 망인 명의로 2015. 12. 30.경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체결된 무배당프로미라이프 내생애첫건강보험1509(실비보험)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상에 계약자인 망인의 주소 역시 원고가운영하던 미용실 주소로 기재된 사실, 물고 명의의 각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 112~****~6517~***, 갑 제12호증, 계좌번호 : 112~****~0767~***, 갑 제18호증, 이하'이 사건 각 부산은행 계좌'라 한다)의 각 거래내역에는 2012. 8.경부터 망인의 급여가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각 부산은행 계좌로 입금되고, 2015. 2. 26.경부터는 이 사건 각부산은행 계좌 중 전자의 계좌에서 수시로 망인에게 기십만원씩 이체되기도 한 사실, 망인의 형제자매들과 원고의 지인 등이 원고와 망인이 사실혼관계에 있었다는 취지의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0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8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 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원고는 망인과 결혼식을 거행하거나 최소한 양가 친지나 가까운 지인들을 초대해 조촐하게나마 예식을 올린 적 이 없는 점, ② 원고와 망인이 동거하면서 살림을 차렸다는 부산 부산진구 소재 2층 건물의 2층은 너비 약 2m, 길이 약 4m의 비좁은 방 1칸만이 있어 도저히 살림을 하기 에는 부적절한 장소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2003. 7.경부터 경남 양산에서 '**헤어클 럽'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여 왔는데, 양산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원고가 양산 과 부산 범천동을 오가면서 범천동에 있는 위 비좁은 방에서 망인과 상당기간 동거하 였다는 점도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점, ④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각 부산은행 계좌는 망인의 급여가 지속적으로 입금되어 왔으며, 이 사건 각 부산은행 계좌의 거래상대방 은 대부분 망인의 거래처나 망인과 같이 일하던 인부, 지인이며, 이 사건 각 부산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이 대부분 계좌이체 또는 현금인출로 이루어진 사정 등을 종합해 보 면, 이 사건 각 부산은행 계좌는 신용불량자이던 망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한 계좌로 보 이는 점, ⑤ 망인은 2013~2014년경 원고의 자녀들의 각 결혼식에도 참석하였다고 하나 망인이 가족석에 앉아 찍은 사진은커녕 원고의 가족, 친지들과 함께 찍은 사진조차 존 재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도 원고와 망인이 원고의 친지나 피고의 친인척 결혼식에 여 러 차례 함께 참석하였다면서도 원고와 망인이 함께 가족사진을 촬영한 적도 없는 점,

⑥ 원고는 망인과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던 적도 없을 뿐 아니라 망인의 사망 당시까지 망인과 동거하였다고 하면서도 별다른 망인의 유품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보이는 점, ⑦ 망인의 형제자매들과 망인의 자녀들인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망인의 사망 후 보상금이나 합의금 등 수령과 관련하여 갈등을 빚어 사이가 좋지 않은 것으로보이는 점으로 미루어 망인의 형제자매들의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망인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회적 사실, 즉 혼인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현